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알림

1.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용량주의" 성분 정보를 보다 명확히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 공고 사항을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은 우리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용량주의 성분' 개정사항.
3.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첨단제품허가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품질과장, 임상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사전상담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신속심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약품규격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약효동등성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순환신경계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생물제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종양항생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생약제제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실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실사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장),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병원약사회장, (사)대한치과의사협회장,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사)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주무관	**이여름**	사무관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전결 2021.12.16. **오정원**
협조자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7410 (2021. 12. 1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718 팩스번호 043-719-2700 / summer0808@korea.kr / 대국민 공개